

1. 재해발생 경위

2004년 2월 0일 04:50분경 충남 논산시 소재 ○○스태프 공장 화장품용기 성형작업장내에서 성형기에서 취출된 용기를 컨베이어로 운반하여 재해자가 용기를 포장박스에 담는 작업을 하던 중 성형기에서 제품이 컨베이어로 떨어지지 않자 재해자가 성형기 금형 내부를 확인하던 중 좌측 금형이 갑자기 작동하여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성형기 안전문 연동장치 기능 제거
- 나. 기계 운전 중 점검, 청소, 검사 등의 작업 실시
- 다. 협착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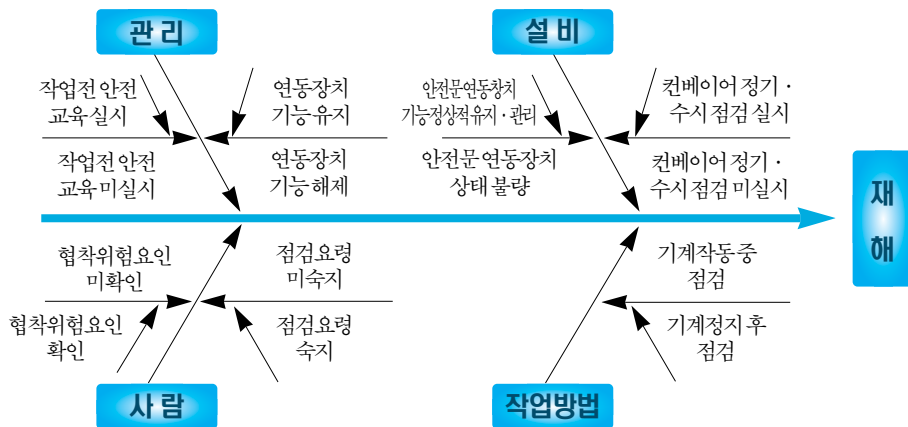
가. 안전문 연동장치 및 기능 확인 철저
성형기의 안전문 연동장치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이므로 연동기능이 해제된 상태로 사용을 금지하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나. 기계정지 후 점검, 청소, 검사 등 작업 실시
협착위험이 있는 성형기 금형내 점검, 청소, 검사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하여야 함.

다. 협착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성형작업 및 근접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문 연동장치의 필요성, 금형작동의 위험성, 안전작업절차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5. 범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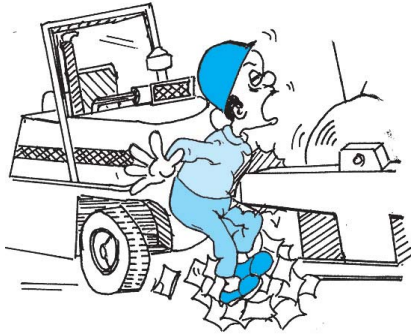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업 작 사 고 II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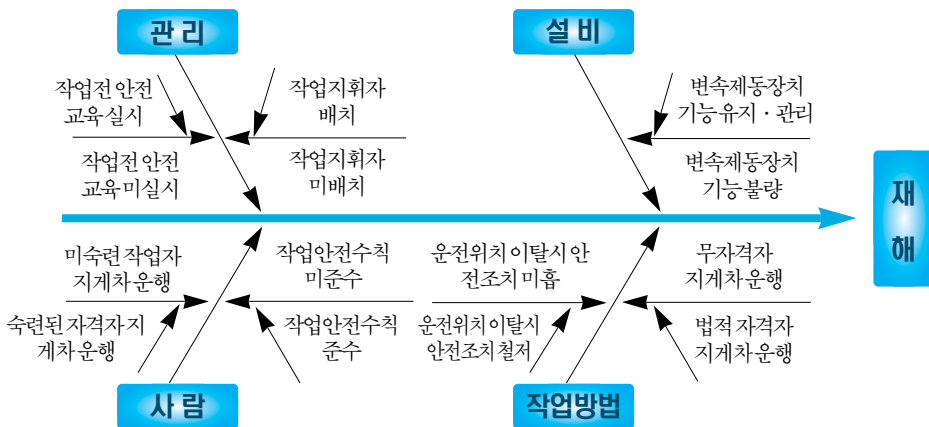
2004년 3월 ○일 17:00분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공업 제지공장내에서 종이 원지를 릴에 감는 공정에서 발생한 파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야적장으로 치우는작업을하던 중 4m 정도 떨어진 원지를 감는 릴에서 파지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게차를 정지시킨 후 기어를 후진방향으로 놓고 내려 파지를 치우던 중 지게차가 후진하여 지게차와 릴설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무자격자의 지게차운전
- 나. 운전위치 이탈시 안전조치 미흡
- 다. 안전교육 미흡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무면허자 지게차 운전금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면허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운전위치 이탈시 안전조치 철저
운전위치 이탈시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런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안전교육 실시
지게차운행시 발생하는 작업의 위험성 재해예방대책, 안전한 운행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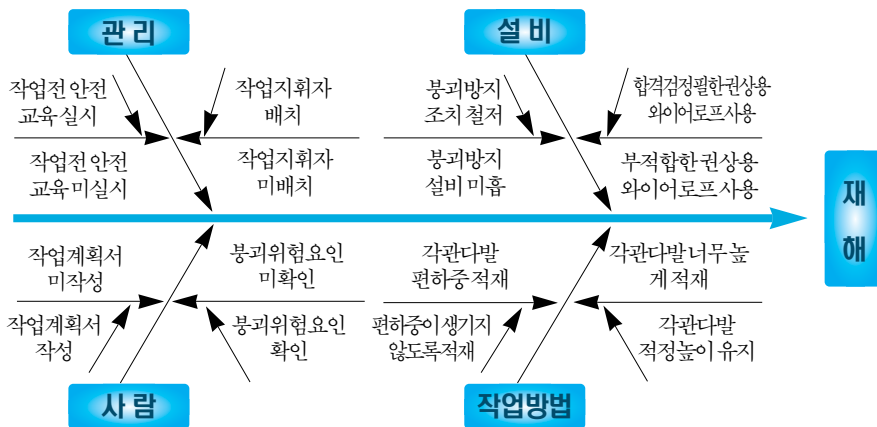
2004년 2월 ○일 13:00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주) ○○ 작업장내에서 천장크레인(5톤)으로 지상 1.5m 높이의 각관다발(약 25톤)을 권상하기 위해 줄걸이 작업을 하던 중 옆에 적재해 두었던 각관다발이 붕괴되어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각관다발의 불안정한 적재
-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 다. 작업지휘자 미배치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각관다발 붕괴방지 조치
 붕괴 우려가 높은 적재물 취급작업시 붕괴·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하중 및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지 않아야 함.

나.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작업시에는 사전에 위험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후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다. 작업지휘자 지정·배치

중량물 낙하·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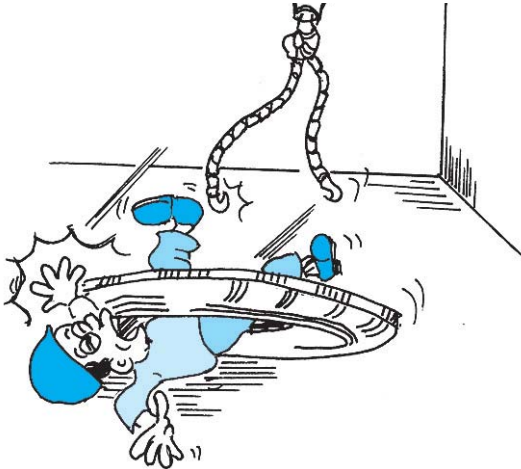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업 작 사 고 IV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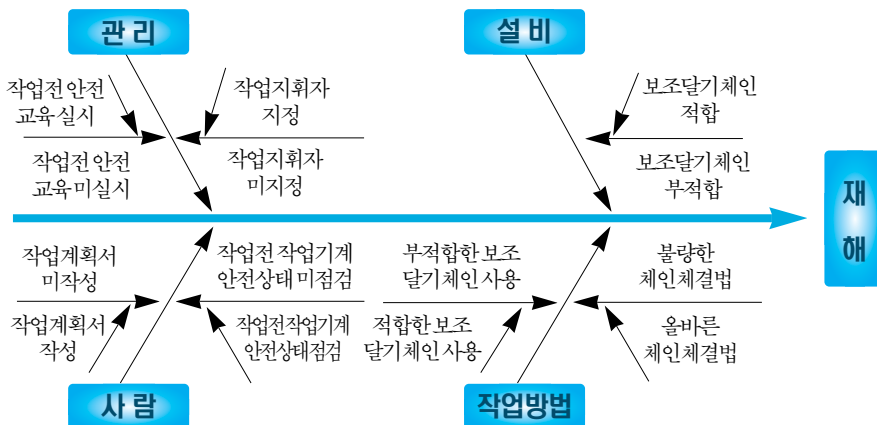
2004년 3월 ○일 10:00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재 ○기계 공장내에서 열교환기 부품인 조인트를 호이스트로 권상하던 중 보조 달기체인이 풀리면서 조인트가 낙하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보조 달기체인 부적정
- 나.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 다. 안전의식 결여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보조 달기체인 양단에 후크 사용
보조달기기로 사용되는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는 양단에 후크·샤클·링 또는 고리 등을 구비한 것을 사용하고 정확한 체결에 의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중량물 취급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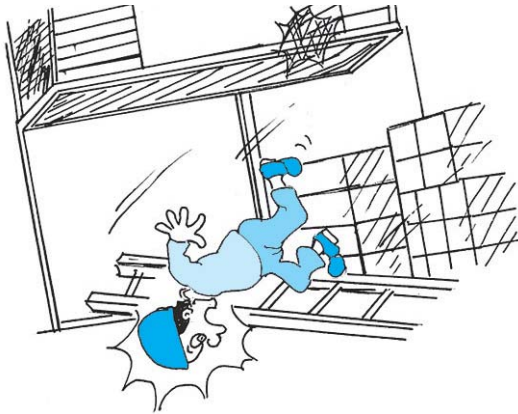
다. 안전교육 실시
작업시작 전 당해 작업의 위험성을 알려 주고 재해 예방대책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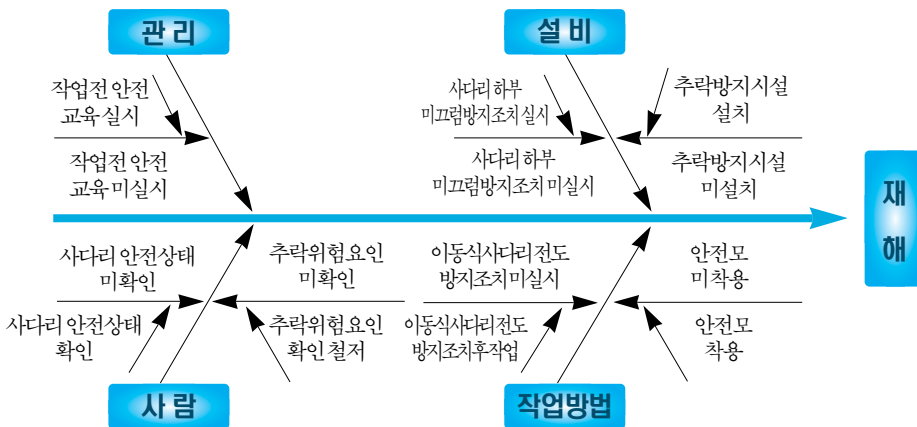
2004년 2월 ○일 14:30분경 부산시 기장군 소재 ○공업사 공장입구 상부에 설치된 적재대 위에서 부품박스를 정리하고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어 31m 아래 바다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이동식사다리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나.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다. 안전모 미착용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이동식사다리 전도방지조치 실시

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사다리의 상부를 고정시키고 하부에는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나. 추락방지시설 설치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적재대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난간 및 고정식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 안전모 착용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작업자 머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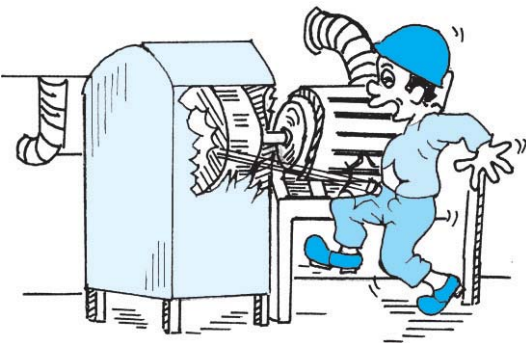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비 래 사 고

1. 재해발생 경위

2004년 3월 ○일 16:00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기업 공장내에서 버프연마기로 수도꼭지 가공재 곡률부분의 연마작업을 하던 중 손이 덮개 안으로 말려들면서 가공재를 놓치는 순간 가공재가 연마기 커버 내부에서 2-3회 회전하면서 덮개 상부 전면으로 비래하면서 재해자가 가슴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버프연마기 덮개 설치상태 미흡
- 나. 가공물 받침대 미설치
- 다. 면장갑 착용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연마기에 적합한 덮개 설치
연마작업시 가공물이 말려들어가거나 비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마작업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나. 받침대 설치

연마작업시 가공물 지지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연마기의 연마부분 하단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가죽용 장갑 착용

표면이 미끄러운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연마를 할 때에는 가공물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밀착이 잘되는 가죽용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